2021년 제6차 이사회 의사록

Ⅰ 회의 개요

1. 일시 및 장소

□ 일시: 2021. 10. 12.(화) 14:00 ~ 17:30

□ 장소: 72동 415호(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)

2. 참석현황

□ 참석이사: 전수안(이사장), 최창원, 권오규, 지은희, 성기학, 오세정(총장), 여정성(교육부총장), 이원우(기획부총장), 한호성, 김병섭, 박현애 (이상 11명)

□ 불참이사: 정종철(교육부 차관), 안도걸(기획재정부 제2차관), 이기형, 류근관 (이상 4명)

□ 참석감사: 마광열, 윤현철 (이상 2명)

□ 배 석: 김용진 기획처장, 김은미 교무처장, 장기발전계획위원회 비전분과 김의영 연구책임자, 김준기 재정분과위원장 (이상 4명)

3. 회의안건

□ **보고사항**

제1호. 장기발전계획위원회 비전분과 논의 내용

제2호.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분과 논의 내용

□ **추인사항**

제1호.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(안)(휴학)

□ **심의·의결사항**

제1호. 2020회계연도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(안)

제2호.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 선임(안)

간 서명	이사장 전수안 (인)	이사 최창원 (인)	이사 박현애 (인)

□ 논의사항

제1호. 이사 후보군 추천

□ 기타사항

제1호.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

II 회의 내용

1. 개회

- 전수안 이사장이 성원을 확인한 후 오후 2시에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
- 김용진 기획처장이 전차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하고, 전수안 이사장이 이사들의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
- 김용진 기획처장이 2021년 제1차 이사회 운영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함

2. 보고사항

제1호. 장기발전계획위원회 비전분과 논의 내용

❑ 주요내용

- 김용진 기획처장이 관련 경과를 보고하고, 김의영 연구책임자가 장기발전계획위원회 비전분과 주요 논의 의제(미래 환경변화와 당면 현안, 위기와 반성, 2040 비전과 발전방향, 전략과제 등)에 대해 보고함

제2호.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분과 논의 내용

❑ 주요내용

간 서명	이사장 전수안	이사 최창원 (인)	이사 박현애 (인)

■ 김용진 기획처장이 관련 경과를 보고하고, 김준기 분과위원장이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분과 주요 논의 의제(향후 재정 전망, 해외 유수 대학과의 비교, 수입과 지출, 재정관리 등)에 대해 보고함

3. 추인사항

제1호.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(안)(휴학)

❑ 주요내용

■ 학년도 및 학기를 학위과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 명시(안 제49조제1항 및 제2항)

■ 휴학기간에 방학을 포함, 1회에 신청 가능한 휴학기간에 연 단위 병기, 연 단위 휴학기간을 운영할 근거 명시 (안 제66조제3항)

■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에 연 단위 병기 (안 제66조제5항)

❑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고
제49조(학년도·학기)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 [개정 2015.2.6.]	**제49조(학년도·학기)**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 **다만, 학위과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** [개정 2015.2.6., **2021.00.00.**]	-학년도 및 학기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명시
② 학기는 매 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.	② 학기는 **학위과정에 따라 매 학년도 2개 학기 이상으로 정하며, 자세한 사항은** 매 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. **[개정 2021.00.00.]**	
제66조(휴학) ①~② (생 략) ③ 휴학은 **2개 학기까지**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권고휴학은 4개 학기까지, 군휴학은 의무복무기간이 포함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.[개정 2018.6.15.]	**제66조(휴학)**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**휴학기간은 방학을 포함하며 1회에 1년 이내의 학기 단위로** 신청할 수 **있고 연 단위 휴학기간은 매 학년도 3개 학기 이상을 운영하는 학위과정에 적용된다.** 다만,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권고휴학은 4개 학기 또는 2년까지, 군휴학은 의무복무기	-휴학기간은 방학을 포함, 1회에 신청 가능한 휴학기간 명시 -학제가 다른 대학(원)을 고려하여 휴학기간에 연 단위 병기

간 서명	이사장 전수안	이사 최창원	이사 박현애

	간이 포함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.[개정 2018.6.15., **2021.00.00.**]
④ 휴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[개정 2014.12.19., 2018.6.15.]	④ 휴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[개정 2014.12.19., 2018.6.15.]
1. 학사과정 : 6개 학기. 다만, 약학대학은 8개 학기, 예과과정 및 편입학한 경우에는 각각 3개 학기로 하되, 의과대학 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로 편입학한 경우와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전과한 경우는 6개 학기로 한다. [개정 2018.6.5., 2020.2.27.] [시행 2022.3.1.]	1. 학사과정 : 6개 학기 **또는 3년**. 다만, 약학대학은 8개 학기, 예과과정 및 편입학한 경우에는 각각 3개 학기로 하되, 의과대학 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로 편입학한 경우와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전과한 경우는 6개 학기로 한다.[개정 2018.6.15., 2020.2.27.] [시행 2022.3.1.]**[개정 2021.00.00.]**
2.석사과정 : 4개 학기. 다만, 치의학대학원, 의학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6개 학기**,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는 8개 학기로 한다.**[개정 2013. 4. 24., 2018. 6. 15][개정 2020. 3. 25.]	2.석사과정 : 4개 학기 **또는 2년**. 다만, 치의학대학원, 의학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6개 학기**로 한다**. [개정 2013. 4. 24., 2018. 6. 15., 2020. 3. 25., **2021.00.00.**]
3. 박사과정 : 6개 학기. 다만, 법학전문대학원은 4개 학기로 한다. [개정 2018.6.15.]	3. 박사과정 : 6개 학기 **또는 3년**. 다만, 법학전문대학원은 4개 학기로 한다. [개정 2018.6.15., **2021.00.00.**]
4. 학사·석사통합과정 : 10개 학기. 다만, 치의학대학원 학사·전문석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 및 전문석사과정 각각 6개 학기로 한다. [신설 2018.6.15.]	4. 학사·석사통합과정 : 10개 학기 **또는 5년**. 다만, 치의학대학원 학사·전문석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 및 전문석사과정 각각 6개 학기로 한다. [신설 2018.6.15.] **[개정 2021.00.00.]**
5. 석사·박사통합과정 : 8개 학기[개정 2018.6.15.]	5. 석사·박사통합과정 : 8개 학기 **또는 4년** [개정 2018.6.15., **2021.00.00.**]
6.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 : 10개 학기[개정 2018.6.15.]	6.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 : 10개 학기[개정 2018.6.15.]
⑤ 다음 각 호의 휴학기간은 제4항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.	⑤ 다음 각 호의 휴학기간은 제4항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.
1. 군휴학 : 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. 다만, 종강일 후 입영 또는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휴학학기로 본다.	1. 군휴학 : 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. 다만, 종강일 후 입영 또는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휴학학기로 본다.
2. 창업휴학 : 2개 학기	2. 창업휴학 : 2개 학기 **또는 1년**
3. 임신·출산휴학 : 2개 학기	3. 임신·출산휴학 : 2개 학기 **또는 1년**

간 서명	이사장 전수안	이사 최창원	이사 박현애

4. 육아휴학 : 4개 학기 5. 질병휴학 : 4개 학기 6. 권고휴학 : 4개 학기 [신설 2018.6.15.]	4. 육아휴학 : 4개 학기 **또는 2년** 5. 질병휴학 : 4개 학기 **또는 2년** 6. 권고휴학 : 4개 학기 **또는 2년** [신설 2018.6.15.] **[개정 2021.00.00.]**	
<신 설>	**부칙 <제0000호, 2021.00.00.>** **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**	-적용시기 명시

❑ 심의결과

■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김은미 교무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,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추인함

4. 심의·의결사항

제1호. 2020회계연도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(안)

❑ 주요내용

■ 2020회계연도 종합재무상태표 요약(案)

(단위: 억원)

구 분	서울대	산학협력단	(재)서울대발전기금	단과대학발전기금	종합재무상태표		
					2020년도	2019년도	증감
자산(A=B+C)	**51,549 (100%)**	**5,484 (100%)**	**6,459 (100%)**	**1,898 (100%)**	**65,205 (100%)**	**60,736 (100%)**	**4,469 (7%)**
현금및 현금성자산	2,984 (6%)	3,826 (70%)	410 (6%)	133 (7%)	7,354 (11%)	7,110 (12%)	244 (3%)
유형자산	47,000 (91%)	1,172 (21%)	254 (4%)	24 (1%)	48,450 (74%)	45,380 (75%)	3,070 (7%)
기타자산 [1] [2]	1,565 (3%)	486 (9%)	5,795 (90%)	1,741 (92%)	9,401 (15%)	8,246 (13%)	1,155 (14%)
부채(B) [3]	**3,839**	**2,618**	**182**	**7**	**6,628**	**6,345**	**283**
자본(C) [2] [4] [5]	**47,710**	**2,866**	**6,277**	**1,891**	**58,577**	**54,391**	**4,186**

1] 선급금, (장기)미수금, 투자자산 등

2] 기타자산 중 발전기금에서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사용수익기부자산(169억원) 등 186억원은 내부

간 서명	이사장 전수안	이사 최창원 (인)	이사 박현애 (인)

거래에 해당하여 종합재무제표 작성 시 자본(전기이월운영차액) 등과 상계됨

3」 부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니며 정부출연금 수령분 등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지출이 예정된 금액이 회계 상 부채로 인식된 것임

4」 자본은 서울대 법인설립 시 정부로부터 양여받은 토지, 건물 등으로 구성되며 산학협력단 적립금, 발전기금 기본재산 등을 포함

5」 서울대는 당기에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양여·출연·기부받는 경우 기타기본금으로 표시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기타기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 정책을 변경함

■ 2020회계연도 종합운영계산서 요약(案)

(단위: 억원)

구 분	서울대	산학협력단	(재)서울대발전기금	단과대발전기금	종합운영계산서		
					2020년도	2019년도	증감
운영수익(A)	8,503 (100%)	6,754 (100%)	1,009 (100%)	216 (100%)	15,875 (100%)	15,500 (100%)	375 (2%)
등록금수입	1,838 (22%)	- (0%)	- (0%)	- (0%)	1,838 (12%)	1,828 (12%)	10 (1%)
정부출연금및보조금 1」	5,046 (59%)	- (0%)	- (0%)	- (0%)	5,046 (32%)	4,510 (29%)	536 (12%)
산학협력수익및지원금수익	- (0%)	5,656 (84%)	- (0%)	- (0%)	5,656 (36%)	5,398 (35%)	258 (5%)
기부금및간접비수익	21 (0%)	1,005 (15%)	738 (73%)	97 (45%)	1,861 (12%)	2,362 (15%)	△501 (△21%)
기타수입 2」	1,598 (19%)	93 (1%)	271 (27%)	119 (55%)	1,474 (8%)	1,402 (9%)	72 (5%)
운영비용(B)	8,066 (100%)	6,576 (100%)	806 (100%)	151 (100%)	14,963 (100%)	14,524 (100%)	439 (3%)
인건비	4,784 (60%)	2,992 (45%)	271 (34%)	4 (3%)	7,788 (51%)	7,318 (50%)	470 (6%)
관리운영비 3」	2,185 (27%)	746 (11%)	323 (40%)	57 (38%)	2,938 (20%)	2,934 (20%)	4 (0%)
연구비	273 (3%)	2,482 (38%)	55 (7%)	34 (22%)	2,844 (19%)	3,006 (21%)	△162 (△5%)
학생경비	792 (10%)	353 (6%)	132 (16%)	13 (9%)	1,290 (9%)	1,186 (8%)	104 (9%)
기타비용	32 (0%)	3 (0%)	25 (3%)	43 (28%)	103 (1%)	80 (1%)	23 (29%)
당기운영차익(C=A-B) 4」	437	178	203	65	912	976	△64

1」 정부출연금은 4,844억원이 세입 되었으며 이 중 건물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재무상태표 해당 자산에 차감 표시되어 운영계산서 상에는 4,572억원으로 계상(보조금 수입 474억원)

간 서명	이사장 전수안 (인)	이사 최창원 (인)	이사 박현애 (인)

2」 서울대 기타수입 중 607억원은 산학협력단, 발전기금회계 전입금 등으로 개별 재무제표에만 계상되며 종합재무제표 작성 시 상계됨

3」 시설관리비, 일반관리비, 운영비(감가상각비) 등

4」 서울대는 당기에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양여·출연·기부받는 경우 기타기본금으로 표시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기타기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 정책을 변경함

❑ 심의결과

■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, 김용진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, 마광열 감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함

제2호.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 선임(안)

❑ 주요내용

■ 한호성 이사(평의원회 추천 이사)의 임기가 2021. 11. 23.자로 만료되기에 후임 이사 선임

❑ 심의결과

■ 전수안 이사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김용진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,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정철영(농업생명과학대학) 교수에 대한 투표를 거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후임 이사로 선임함

5. 논의사항

제1호. 이사 후보군 추천

❑ 주요내용

■ 이사회 구성 절차, 구성 근거, 관련 규정, 2017~2020년 이사후보초빙위원회 추천 현황 등 검토

■ 2021년 제1차 이사회 운영소위원회 논의 내용 공유

간 서명	이사장 전수안	이사 최창원 (인)	이사 박현애 (인)

❑ 논의결과

■ 전수안 이사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, 김용진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이사 후보군 추천에 대하여 논의함

■ 이사회가 이사 후보군 추천 관련 사항을 이사후보초빙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함

6. 기타사항

제1호.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

■ 2021년 제7차 이사회를 2021. 11. 29.(월)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함

7. 폐회

■ 보고 및 논의를 종료하고, 이사장이 오후 5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함

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

이사장 전 수 안 (인)

이 사 최 창 원 (인)

이 사 박 현 애 (인)

간 서명	이사장 전수안 (인)	이사 최창원 (인)	이사 박현애 (인)